「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구 미 시 장
3. **회부일자:** 2026년 10월 7일
4. **상정일자:** 2026년 10월 14일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창업경제국장 김 영 철

2. 제안이유

가. 구미시 취업지원센터는 구직자와 기업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 맞춤형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과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이 필요함.

나.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의 기획·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과 경험 등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1)「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4조, 제5조, 제6조, 제15조

2)「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16조

다. 위탁사무 :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전반

1) 구인처·구직자 상담, 교육 및 일자리 수요공급 매칭

2) 유관기관 및 기업 맞춤형 연계체계 구축

3) 취업성공자 사후관리 및 취업지원사업

4) 국가 취업지원사업 수행 등

라. 시설개요

1) 시 설 명 :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2) 소 재 지 : 구미시 백산로 118, 고용복지+센터 3층 (송정동)

3) 직원현황 : 5명(센터장 1, 팀장 1, 컨설턴트 3)

마. 위탁기간 : 2027. 1. ~ 2029. 12.

바. 위탁조건

1) 취업관련 위탁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2) 수탁업무 외 위탁 및 법인, 단체사무 처리 불가

3)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구미시와의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아. 소요예산 : 250백만원(도비 50, 시비 200) ※ 2027년 기준

자.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6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26. 8. 26.)

차. 성과평가 및 자체감사 결과 : 적정

※ 부서의견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4조, 제5조, 제6조, 제15조

2)「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16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성과평가 결과 및 감사 결과 : 안건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동의안은

- 「구미시 취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고용복지+센터 내에 위치하여 구인·구직 상담부터 취업교육, 일자리 매칭,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최근 연도별 실적[1]을 살펴보면 취업률이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기별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현장 매칭 기회를 확대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판단됨.

-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현장 노하우를 활용하여 구인·구직 매칭 및 기업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본 사무는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감사시 지적된 산업단지 및 업종별 인사 간담회 활성화와 구직자 적성검사 확대 등 내실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여, 구미시 고용 여건에 발맞춘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취업 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 론 요 지: 생 략

1) 연도별 구직 실적

년 도	서비스 신청자(명)	취업자(명)	신청 대비 취업률
2022년	3,647	857	23%
2023년	4,965	1,356	27%
2024년	3,607	1,131	31%
2025년	3,229	955	29%
2026년 8월	2,231	736	33%

Ⅵ.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Ⅶ. 심 사 결 과: 원안가결